

영국에서의 저작권 남용 규제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1995

문헌: 저작권

권호: 31호 (1995년)

출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3]

차 례

- _ I. 서 론
- _ II. 저작권법정
- _ III.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 _ IV. 저작물 등의 자유로운 유통과 저작권의 제한
 - _ 1. 경쟁제한적 사업행위
 - _ 2. 독점에 관한 조사
 - _ 3. 병행수입

I. 서 론

_ 우리는 지난 10년간 저작권 보호의 강화에만 관심이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병행수입(Parallel imports)의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지적소유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될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적소유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남용 규제도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남용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도 있다.

_ 그러나 불행히도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나 독점규제법의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 주된 관심 대상은 상표권이나 특허 발명에 제한되어 있고, 저작권이 병행수입에 미치는 영향이나 저작권 남용에 의한 독점적 지위의 형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저작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작권의 철저한 보호를 동시에 실현시켜 주기 위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발전에 관해서도 연구와 추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저작권 남용의 폐해는 이미 선진국에서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분쟁, 특히 저작물 이용료(로열티)의 산정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의 모색이 선진국에서 이미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_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남용의 규제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에서는 영국의 관련된 제도와

[34]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저작권법정

_ 영국의 현행 저작권법은 특허법에서와 같은 강제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 남용의 위협을 고려해서, 1911년 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의 녹음에 관해서는 음악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제3자가 자유롭게 음반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도 있다. 저작권 남용의 위협은 오히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부터 문제 되어 왔다.

_ 영국에는 그러한 저작권단체로서 공연권을 관리하는 Performing Right Society(PRS)와 Phonographic Performance Ltd(PPL)의 두 단체가 있고,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로서 Mechanical Copyright Protection Society가 있다. 이러한 집중관리단체들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56년 저작권법은 공연권법정(Performing Right Tribunal: PRT)을 신설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이용허락 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공연권법정과 같은 분쟁해결 기구는 그 후에 미국, 호주, 독일 등에도 도입되었다.

_ 복제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복제권을 관리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도 등장하게 되었는 바,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1988년 저작권법은 기존의 공연권법정을 저작권법정(Copyright Tribunal)으로 바꾸었다.

_ 저작권법정은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 그리고 2인 내지 8인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분쟁의 해결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판부에서 담당한다. 저작권법정의 관할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자와의 이용 조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저작권자와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정이 관할하는 공적통제(Public control)를 하는 것은 베른협약에 반하기 때문이다.주1)

_ 분쟁 해결의 신청은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나 또는 이용허락이 거절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_ 따라서, 저작권법정은 이용허락의 일반적 조건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 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 이용허락 계약조건을 사후에 심사하여 변경을 명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_ 1956년 이래 활동해 온 공연권법정(PRT)은 다수의 분쟁 해결을 통하여 저작물의 공연허락에 관한 주요한 공적통제를 해 왔다. 특히,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여부를 결정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관한 판단을 통하여 중요한 공적 통제가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다.

_ 예컨대, 작곡가 등이 가진 공연권을 위탁관리해 주는 PRS가 영화관에 공연허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정 영화관이 어떠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차별적인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일적인 이용료에 의한 이용허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심판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음반에 관한 공연·방송권을 위탁관리

해주는 PPL이 지역방송국에 음반의 방송을 허락함에

[35]

있어서 당해 방송국이 음반을 방송해야 할 시간 비율(Needle time)주2) 을 이용허락 조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_ 특히 후자의 경우에, 음반의 방송허락에 있어서 음반의 방송 시간과 생음악의 방송 시간과의 비율을 이용허락 조건으로 정하는 것이 일응 방송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이용 조건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공연권법정은 PPL이 가수나 연주단의 실연과 그의 음반 취입에 관하여 장기적인 차원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의 음반 방송과 생음악 방송의 시간 비율을 이용허락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용허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주3) 공연권법정의 관할을 넘겨 받게 된 저작권법정은 계속하여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III.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_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이 자치규범의 형식으로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체 자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수도 있게 된다.

_ 예컨대, 독일의 GEMA는 공연권뿐만 아니라 음악을 녹음하는 등의 복제권도 위탁관리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하나인데, GEMA는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의 저작권 전부를 신탁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리고 GEMA는 회원들이 탈퇴하거나 음반제작회사 등 저작물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탈퇴의 사전통지 기간을 길게 정해 놓고 20년 이상 계속회원의 지위를 보유한 회원들에 대해서 특별회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_ GEMA의 이러한 규칙에 대하여 유럽공동체위원회(EC Commission)는, GEMA가 회원들의 저작권전부를 양도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GEMA의 활동영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에서의 저작권까지도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규칙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주4)

IV. 저작물등의 자유로운 유통과 저작권의 제한

_ 영국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에 관한 법 제도는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다. 우선, 경쟁 제한적 계약이나 협정들은 공정법래청장(Director-General of Fair Trading)에게 등록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법 법정(Restrictive Practices Court)에 당해 경쟁 제한적 계약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이에 관한 법령으로는 '경쟁제한적 사업행위에 관한 법률(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76)'과 '재판매가격에 관한 법률(Resale prices Act 1976)', 그리고 '경쟁법 법정에 관한 법률(Restrictive Practices Court Act 1976)'등이 있다.

_ 다음으로,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청장 또는 국무장관이 당해 남용행위에

[36]

대한 조사를 '독점 및 합병안원회(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에 의뢰하고, 동 위원회는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에 관한 법령으로는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73)이 있다.

_ 마지막으로, 그 밖의 반경쟁적인 행위들에 관한 공정거래청장과 독점 및 합병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경쟁법(Competition Act 1980)'이 적용될 수 있다.

1. 경쟁제한적 사업행위

_ 영국의 1976년 경쟁 제한적 사업행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동 법에 열거된 경쟁제한을 포함한 계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자는 당해 계약 등을 신고해야 한다. 동 법은 탈법적인 합의를 차단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합의라고 약속한 경우에도 당해 합의는 동 법의 경쟁 제한을 포함하는 한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_ 지적재산의 이용허락 등에 관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동 법에 열거된 경쟁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면 신고의 대상으로 된다. 다만 문제는, 특허발명실시권자(Patent licensee) 또는 저작물이용권자(Copyright licensee)가 그 실시 분야 또는 이용 분야와 분량 및 가격 등에 관한 조건을 수락한 경우에 항상 당해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인지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_ 특허발명 실시허락이라거나 저작물 또는 의장 이용허락 등에 관해서는 일정한 신고의무 면제가 인정된다. 즉, 문제 된 제한조건이 발명, 저작물, 의장상품 그 자체의 생산이나 가격 등에 관한 제한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자의 보호와 경쟁질서의 유지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인정된 예외이다.

_ 이러한 예외는 당사자 간에 상호이용허락(Cross licensing)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다만 3인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의 소위 공동이용허락(Pooling agreements)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이용 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는 경쟁 제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_ 이러한 예외는 영업비밀(Confidential information)과 같은 경우에도, 당해 영업비밀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관한 제한인 한 그대로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지만,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5)

_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용허락 계약등은 관련된 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청장에게 신고 및 제출되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당해 계약은 법적으로 집행될 수 없고, 그러한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_ 신고된 경우에도 공정거래청장이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사를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쟁법 법정에 이송하게 되고, 동 법정은 문제된 계약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_ 동 법정은, 문제 된 경쟁 제한이 허용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해 계약의 이행 금지를 명령하는데, 그러한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7]

법정모욕죄로 처벌되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

2. 독점에 관한 조사

_ 공정거래청장이 독점적 상황(monopoly situation)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독점 및 합병위원회(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MMC)에 의뢰하여, 동 위원회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_ 독점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는, 영국에서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25% 이상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에 공급되거나, 그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기업이 25%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즉, 복합적·독점적 상황의 경우)에는 독점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독점 및 합병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독점적 상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존재한다면 문제 된 개인이나 기업 또는 그룹이 어떠한 방식으로 독점적 상황을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독점적 상황으로 인하여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이 침해되었는지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_ 동 위원회가 독점적 상황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공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게 되면, 국무장관 또는 관련된 부처의 장관은 1973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차별금지, 무효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등의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관에 의한 직접적인 명령보다 공정거래청장으로 하여금 문제 된 기업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 된 사례 하나를 보면, 영국의 포드자동차회사(Ford Motor Company)가 자동차 부품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근거로 하여 다른 중소 부품업체들이 동일한 교환용 부품(replacement parts)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독점적 상황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부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이익이 침해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다. 여기에서 포드회사는, 저작권의 통상적인 행사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절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허락을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_ 그러나 영국의 독점 및 합병위원회는 그러한 포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포드의 이용허락 거절이 부품산업 내의 부당한 경쟁제한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공공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동 위원회는 문제 된 당시 1985년의 영국 법 제도하에서는 포드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이용허락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_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동차회사의 저작권 남용에 관한 유사한 사건으로 Leyalnd Motor Corp.Ltd.v.Armstrong Patents Ltd.주6)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BL 자동차회사는 차량 생산에 소요되는 배기관의 제작 디자인 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근거로 해서, 아무런 허락도 없이 동일한 배기관을 생산하는 피고 Armstrong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피고는, BL이 배기관 디자인 도면

[38]

을 직접 무단 복제한 것은 아니고 생산·판매된 BL 자동차의 배기관을 보고 동일한 배기관을 제조해서 부품시장에 판매한 것이었고, BL은 디자인 도면의 직접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기관을 제조하는 것도 디자인 도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_ 이러한 사실 관계하에서, 영국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기관과 그 외관을 모방해서 원고의 배기관과 대체 가능한 배기관을 제조하는 것은 원고의 배기관 디자인 도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 배기관 디자인 도면의 저작자의 사후 50년 동안, 원고의 허락 없이는 동일한 배기관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따라서 심각한 경쟁 제한의 문제가 제기된다.

_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배기관 디자인 도면의 저작권법 보호를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자동차 부품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대법원은 특허법하에서 특허발명 제품의 구입자가 구입 제품을 사용하고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이론을 원용해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즉, BL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소모품을 교체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고의 소비자에 대하여 배기관에 대한 저작권을 근거로 해서 원고가 생산한 배기관만을 구입하도록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_ 문제의 복잡성은, 제품의 수리 및 교체에 관한 권한은 최종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피고와 같이 제3의 부품제조업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 영국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배기관과 같이 대량생산에 의해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 부품의 경우에 소비자에게 부품을 스스로 수리하고 스스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주어진 수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대량생산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무런 경쟁 제한 없는 부품 시장에서 동일한 부품을 구입해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제3의 부품제조업자에 의한 부품생산을 금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수리 권한을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저작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_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독점 및 합병위원회는 그러한 경우에 경쟁 제한임을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명문의 강제이용허락(compulsory licence)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1988년에 개정된 영국 저작권법은 특정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절하는 행위가 공공이익에 반한다고 영국 독점 및 합병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영국 국무장관이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러한 강제 저작물 이용허락의 구체적인 조건은 저작권법원(the Copyright Tribunal)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주7)

3. 병행수입

_ 영국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권자에 의하여 병행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물품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침해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국의 저작권자가 제3국에서 수출 금지의 조건하에

[39]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여 제조된 저작물이 영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특정 국가에서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을 적법하게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제3자가 제3국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을 수입하여 오는 것을 병행수

입(Parallel imports)이라고 하는 바, 영국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배타적 이용권자(exclusive licensee)에게 그러한 병행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_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음반제작회사들이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음반 가격이 미국에서의 음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영국 독점 및 합병위원회가 11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1994년 6월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동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음반산업은 연간 매출액 17억 달러를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음반(또는 저작권)을 수출하는 국가이며, 영국 내 5대 음반제작회사가 그러한 판매량의 72%를 점유하여 소위 복합적·독점적 상황 속에 있으면서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병행수입 금지로 인하여 영국과 미국 사이에 음반 가격차가 발생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_ 문제는, 저작권법상으로는 병행수입의 금지가 허용되지만, 그러한 병행수입 금지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남용 또는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연합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유럽연합조약상의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병행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판시를 한 바 있다.

_ 예컨대 Deutsche Grammophon v.Metro(주8) 사건에서, 독일 음반업자 Deutsche Grammophon은 그의 프랑스 자회사를 통해 프랑스 내에서 음반을 제작 및 판매하던 중 자회사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제작·판매된 음반이 어느 수입업자에 의해 독일로 수입되어 오게 되자, 자신의 음반제작 등에 관한 '저작인접권(the neighbouring right)'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수입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Deutsche Grammophon은, 프랑스에서는 독일에서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과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불완전하게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랑스로부터 독일로의 음반 유입을 방임하는 것은 독일에서 자신의 저작인접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하였으나, 공동체 법원은 프랑스 내에서의 음반의 제작 및 판매가 Deutsche Grammophon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프랑스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나마 투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저작인접권을 근거로 해서 음반 수입의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음반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초로 한 음반산업의 효율적인 경쟁질서에 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_ 저작권행사의 제한에 있어서, 공동체 회원국들에서의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사례를 본다. 예컨대, 영국 저작권법하에서는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일단 영국에서 제작되거나 영국에 수입되어 시판되면, 다른 음반업

[40]

자도 저작권에 대한 일방적인 통지와 소비자 가격의 6.25%의 사용료 지급만에 의해 적법하게 음반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주9) 이와 관련하여, Musik-Vertrieb v.GEMA(1980)에서 독일 음악저작권협회 GEMA는 영국으로부터 음반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 대해 영국에서의 6.25%의 법정사용료와 그러한 법정사용료 규정이 없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와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주10)

_ 이러한 GEMA의 주장에 대해 공동체 법원은 전술한 Centrafarm v.Sterling(1974) 판례에 이어, 공동체 회원국에서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저작권

관련산업 간의 비교우위가 다소 영향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음악저작권 협회가 그것을 이유로 하여 공동체 역내에서의 음반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초로 한 효율적인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주1)

William R.Cornist, Intellectual Property(London, Sweet &Maxwell, 1989). p.330

주2)

음반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축음기 위의 음반에 축음기 바늘을 올려놓고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음반을 방송하는 시간을 Needle time이라고 하고, 가수나 연주단이 직접 방송국에 출연하여 음악을 공연·방송하는 방송 시간과 대비되는 용어로 이용된다.

주3)

William R.Cornish, Intellectual Property(London, Sweet &Maxwell, 1989), p.332.

주4)

[1971] C.M.L.R.atD47.

주5)

William R.Cornish, Intellectual Property(London, Sweet &Maxwell, 1989). p.501.

주6)

[1986] 1 ALL ER 850.

주7)

Sec.144,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주8)

[1971] C.M.L.R.631.

주9)

Sec.8, the Copyright Act(U.K.) 1956.

주10)

Gluliano Marenco and Karen Banks,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ommunity Rules on Free Movement: Discrimination Unearthed", 15 European L.Rev., 1990, p.224.